#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정관

##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정관

【제정 2018. 1. 15.】 【일부개정 2018. 1. 15.】

#### 제1장 총 칙

- 제1조(목적) 이 정관은 「지방공기업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과 「사천시 시설관리 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(이하 "조례"라 한다)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천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 등이 지정 또는 위탁하는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함으로써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명칭) 공단의 명칭은 사천시시설관리공단(이하 "공단"이라 한다)이라 한다.
- 제3조(사무소의 소재지)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는 사천시(이하 "시"라 한다)에 두다.
  - ②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.
- 제4조(자본금) ① 공단의 자본금은 3억 원으로 하고, 그 전액을 시에서 출자한다.
  - ②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- 제5조(공고방법) 공단이 공고 또는 고시할 사항은 공단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경상남도 내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게재한다. 다만, 공단 홈페이지 개설 전까지의 공고 또는 고시할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.

#### 제2장 사 업

- 제6조(사업) 공단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.
  - 1. 사천실내수영장 관리 및 운영사업
  - 2. 사천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사업

- 3. 사천바다 케이블카 관리 및 운영사업
- 4. 사천시공공하수처리시설(사천·용현·곤양·서포) 관리 및 운영사업
- 5. 사천분뇨전처리장 관리 및 운영사업
- 6. 삼천포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사업
- 7. 삼천포분뇨전처리장 관리 및 운영사업
- 8.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사업
- 9. 소규모 하수처리시설(27개소) 관리 및 운영사업
- 10.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따른 부대사업
- 11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탁사업 또는 대행사업
- 제7조(사업계획서)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받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- 제8조(사업의 집행)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에게 **승인을** 받아야 한다.
  - 1.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
  - 2. 예산 외 채무부담 및 의무를 수반하는 사항
  - 3. 요금, 사용료 등 결정에 관한 사항
  - 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#### 제3장 임원 및 직원

- 제9조(임원) ① 공단에 이사장, 상임이사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둔다.
  - ② 공단의 비상임이사 중 행정국장과 산업건설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.
  - ③ 임원은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, 이사장·감사·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며, 상임이사는 공단의 이사장이임면한다. 다만, 조례 또는 정관으로 당연히 임명되는 비상임이사는 임원추

- 천위원회의 공모 및 추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.
- ④ 감사는 당연직 비상임으로 시의 회계과장이 된다.
- 제10조(임기)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. 이경우 임원의 임면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,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다만,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
  - ② 제1항에 의한 이사장의 연임 기준은 법 제58조제4항에 따른다.
  - ③ 임기 중에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 그 후임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새로이 기산한다.
- 제11조(임원추천위원회) ①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사천 시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두되, 비상설위원회로 한다.
  -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「지방공기업법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56조의3에 의한다.
  - ③ 위원은 임원의 임명이 끝나면 자동 해촉된다.
  - ④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  -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공단에서 임원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. 다만, 공단 설립 전의 간사는 공단 설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장이 된다.
  -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의 「사천시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」으로 정한다.
- 제12조(임원의 직무)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, 공단업무를 총괄하며, 경영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.
  - ② 이사는 이사회에 부의한 의안을 심의하고, 표결에 참여한다.
  - ③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, 공단의 업무를 관장하며, 이사장의 유고시에는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- ④ 감사는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.
- 제13조(조직 및 정원) ① 공단의 조직은 [별표 1]과 같다. <개정 2018. 1. 15.>
  - ② 공단의 정원은 [별표 2]와 같다. <개정 2018. 1. 15.>
- 제14조(직원의 임면) ① 공단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.
  - ② 직원의 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, 업무의 성격·전문성 등을 감안 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력경쟁채용 을 할 수 있다.
  - ③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준비단 직원의 고용승계는 인사규정에 따른다.
- 제15조(임·직원의 결격사유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 및 직원(이하 "임·직원"이라 한다)이 될 수 없다.
  - 1.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
  - 2. 미성년자
  - 3. 「지방공무원법」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- 4. 법 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- 5.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- ② 공단의 임·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또는 채용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.
  -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·직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.
- 제16조(임·직원의 복무) 임·직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규정으로 정한다.
- 제17조(임·직원의 겸직제한) 공단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, 상임임원은 시장의,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.
- 제18조(임·직원의 보수) ① 공단의 이사장, 상임이사 및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규정으로 정한다.
  - ② 비상임이사와 비상임감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당연직

비상임이사로 임명된 공무원을 제외한 비상임이사에게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른 회의참석수당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,이에 대한 지급기준은 따로 정한다.

- 제19조(비밀누설의 금지 등) 공단의 임·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이후에도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된다.
- 제20조(임원의 대표권 제한)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(직무대행자를 포함한다)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장(직무대행자를 포함한다)은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,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.
- 제21조(대리인의 선임) 이사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·직원 중에서 공단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.
- 제22조(고문) ① 이사장은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.
  - ② 고문은 공단의 업무수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의 자문에 응한다.
  - ③ 고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#### 제4장 이사회

- 제23조(이사회의 설치 및 구성)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.
  -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.
  -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- 제24조(의결사항)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  - 1. 공단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
  - 2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  - 3. 정관의 변경, 규정의 제·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  - 4. 조직,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
  - 5. 중요한 재산의 취득·처분 및 임대차에 관한 사항

- 6. 중요한 대행사업의 위·수탁 등에 관한 사항
- 7. 중요한 소송 및 화해에 관한 사항
- 8. 위원회의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
- 9. 임원(당연직은 제외한다)의 징계 등에 관한 사항
- 10. 그 밖에 공단 운영에 필요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사항
- 제25조(의결권의 제한) 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하기 위한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.
- 제26조(의장 및 회의소집) ①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된다.
  - ② 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이사 3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. 다만, 이사회 의장 신분과 관련된 사항은 감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  - ③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, 개최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.
  - ④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, 여비 등 실비이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제27조(의결방법)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- 1. 공단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 결정에 관한 사항
  - 2. 예산과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
  - 3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  - 4. 조직·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
  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에 있어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.
- 제28조(서면결의)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 부의사항 중에서 업무형편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사회 개최를 서면으로 부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.
- 제29조(이사회의 회의록) ①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의사록에 기재하고,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한다.

- ② 이사회 회의록은 경영상의 기밀 등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.
- 제30조(운영규정 등) 그 밖에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.

#### 제5장 재무회계

제31조(사업연도) 공단의 사업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.

- 제32조(예산과 결산)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개최 10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송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사업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. 다만,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개최 7일전까지 송부하여야 한다.
  - ② 공단은 예산의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 - ③ 공단은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법이 정하는 서류 및 행정안전부장 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제33조(회계처리의 원칙) ① 공단의 회계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.
  - ② 공단은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,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으로 정한다.
- 제34조(수입금의 처리) ① 제6조에 따른 사업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익일까지 전액 시 세입으로 납부하여야 한다. 단, 금·토·일요일 및 공휴일수납금은 다음날 금고업무 개시일에 납입하여야 한다.
  - ②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3호의 사업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2일 이내에 전액 시 세입으로 납부하여야 한다.
- 제35조(기금) 이사장은 공단운영에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

승인을 받아 공단에 기금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#### 제6장 보 칙

- 제36조(정관의 변경)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- 제37조(공무원의 파견요구 등) ① 이사장은 공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때에는 공단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시장에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.
  - ②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단의 해당직위에 상당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, 이는 따로 정한다.
- 제38조(시행규정)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.

#### 부 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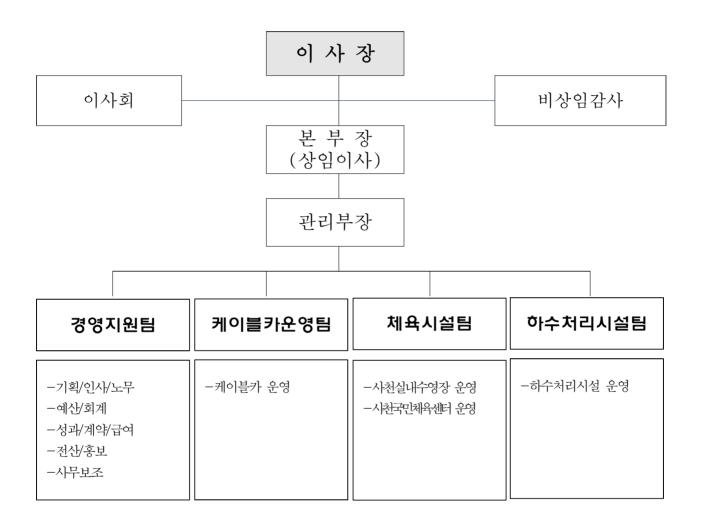
- 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공단이 설립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최초임원의 임기) 공단 최초의 임원 임기는 임명일부터 기산한다.
- 제3조(최초의 사업연도) 공단의 최초 사업연도는 공단의 설립일로부터 당해연 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- 제4조(경과규정) ① 공단 설립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시장이 정한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간주한다.
  - ②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최초의 정관, 직제규정, 인사규정, 보수 규정 등 제규정과 금고지정 및 공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할 수 있다.
  - ③ 이 정관의 시행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정관의 시행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(2018.1.15.)

이 규정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.

### [별표 1] <개정 2018. 1. 15.>

## <u>기 구 표</u>(제13조 관련)



## 【별표 2】 <개정 2018. 1. 15.>

## <u>정 원 표</u>(제13조 관련)

(단위 : 명)

구분	합계	임원	일 반 직						무 기
			소계	3급	4급	5급	6급	7급	계약직
합계	102	2	54	1	4	8	17	24	46
경영지원팀	9	2	6	1	1	1	1	2	1
케이블카운영팀	27		15		1	3	8	3	12
체육시설팀	16		6		1	1	1	3	10
하수처리시설팀	50		27		1	3	7	16	23